

거창군 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3-259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거창군 고시 제2019-21호(2019. 2. 28.)로 최초 결정된 군계획시설(교통시설 : 소로 3-216호선)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인가 고시합니다.

2019. 11. 6.

거창군수

1. 사업시행 개요

종류	명칭	위치		시행규모						시행구간	최초결정일	사업기간
		읍면	리	구분	류별	번호	연장(m)	폭(m)	면적(m ²)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도로 (소로3-259호선)	거창	정장	소로	3	259	77	6	618	소3-259	거창군 고시 제2019-21호 (2019. 2. 28.)	2019. ~2020.

2. 사업 시행자 :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번지(상림리 64-1번지) 거창군수

3.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 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 예정일 : 착공일로부터 6개월

4.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소로 3-259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m ²)	편입 면적 (m ²)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합계	-	-	-	5,603	618					
1	정장리	1167	도	2,188	219		(국)건설부			
2	정장리	784	전	76	64	거창읍 정장리1010-5	송해주			
3	정장리	785-1	대	316	14	거창읍 정장리785-1	정장리마을회			
4	정장리	788	대	145	22	거창읍 정장리785-1	정장리마을회			
5	정장리	812-3	답	142	130	거창읍 정장리1010-5	송해주			
6	정장리	812-2	대	354	3	거창읍 정장리1010-5	송해주			
7	정장리	812	창	2,191	5	거창읍 정장리788	상살미포도 영농조합			
8	정장리	812-4	답	190	161	거창읍 정장리788	상살미포도 영농조합			

5.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1. 6.
거창군수

- 부여한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수남로 2035-5 등 9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8조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2)에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부여

일련 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산86-1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수남로 2035-5	2009-07-02	2019-11-06	행정구역명(수동면+남상면) 활용	
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1116-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강남로1길 94-90	2009-04-01	2019-11-06	강남로의 시작점에서 부터 첫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3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165-1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녹동3길 24-11	2009-04-01	2019-11-06	마을형태가 달아나는 누루가 어미를 돌아보는 것 같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세번째 도로	
4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동례리 886-3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동례5길 79-377	2009-12-28	2019-11-06	동례길의 시점으로부터 다섯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5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702-2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어인안길 56-117	2009-04-01	2019-11-06	어진 사람이 많이 날 것이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 반영	
6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거거리 824-5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외장포길 92	2009-04-01	2019-11-06	임진왜란 때 옮겨온 유성근이 103세, 그 아들이 93세를 살았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 반영	
7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석강리 172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우룩길 311	2009-04-01	2019-11-06	역사적 인물인 우룩의 탄생지임을 반영한 도로	
8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1161-58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월포1길 141-385	2009-04-01	2019-11-06	수월천 소에 달이 비치므로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첫번째 도로	
9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사병리 422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창마1길 125-75	2009-04-01	2019-11-06	고려 때부터 가소현 창고가 있어서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첫번째 도로	

거창군계획시설(시설:수도공급설비) 실시계획인가 고시

『거창읍 가지리 배수지 신설사업』에 따른 거창군계획시설(시설:유통업무설비)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7일

거 창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산196-11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시설:수도공급설비)
 - 명 칭 : 거창읍 가지리 배수지 신설사업
3. 사업시행 규모 및 내용

종류	시설명	위 치	시 행 규 모(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결정면적	금회시행		
군 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산196-11번지 일원	973.0	973,0 (물탱크 2개소)	거창군 고시 제2019-68호 (2019.06.17.)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거창군수(수도사업소장)
 -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5. 사업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0. 05.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붙임과 같음
7. 관계도서는 거창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055-940-35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m ²)	편입 면적 (m ²)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	-	-	973	973					
1	거창읍 가지리	산196-11	임	973	973		거창군			

『어인(군도18호선) 위험도로 개선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

거창군에서 시행하는 『어인(군도18호선)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6일

거 창 군 수

1. 사업개요

- 가. 사업명 : 어인(군도18호선) 위험도로 개선사업
- 나. 위치 : 경남 거창군 가북면 우혜리 일원
- 다. 사업내용 : 도로정비 L=88m
- 라. 사업시행자 : 거창군수(건설과 도로담당)

2. 보상내용

- 가. 토지 : 경남 거창군 가북면 우혜리 일원(붙임참조)
 - 나. 지장물 : 편입토지에 지상에 있는 물건 일체
- ※ 토지 등 세부내역은 거창군청 건설과(도로담당)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거창군 홈페이지 (<http://www.geochang.go.kr/>) ⇒ 입법/공고/고시)에서 토지는 확인 가능함.

3. 열람기간·장소 및 이의신청

-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거창군청 건설과 도로담당(☎ 055-940-3557)
- 다. 이의신청 방법 :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

4. 보상금 협의 및 지급시기 : 감정평가 후 개별통지

5. 보상방법 및 절차

- 가. 보상산정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3인(시·도지사 및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협의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나. 보상시기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토지·물건별 보상금액 및 구비서류 등은 손실보상 협의요청과 함께 개별 통지할 계획입니다.
- 다. 보상방법 :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현금보상(계좌입금)
- 라. 보상절차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 협의 및 보상지급 ⇒ 수용재결(보상협의 불성립 시) ⇒ 공탁 및 수용
- 마. 감정평가업자 추천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창군청 건설과(도로담당)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바.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로 갈음하며, 이해관계인은 권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 전부명령 등 권리권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6. 기타사항

- 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거창군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나. 보상시기는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계획 및 열람 안내문 등을 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통지를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하오니 상기 열람 장소에서 토지 및 물건조서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 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개별 통지**합니다.
- 다.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편입면적(수량)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건설과 도로담당(☎055-940-355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상조서(토지명세)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	-	261,646	708					
1	가북면 용산리	산125- 1	도	106	21		국(건설부)			
2	가북면 용산리	산21	임	73,388	20		거창군			
3	가북면 우혜리	산73	임	177,141	322		거창군			
4	“	2057	도	10,407	48		국(국토교 통부)			
5	“	1291-1	답	604	297	대구 달서구 상인동 1551, 제 림아파트 101-1502	변동규			

공 고

□ 제 목 : 토석(토사)채취 허가 신청 주민 공람

거창군 신원면 대현리 산147번지 토석(토사)채취 허가 신청이 있어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의 규정에 의하여 인근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람을 실시합니다.

○ 토석(토사)채취 허가 신청내용

신 청 지					신청사항						비고
면	리	지번	지적 (㎡)	지 목	계	채취장	산물처 리장	진입로	관리사 무소	완충 구역	
계			126,248		29,418	22,521	0	795	0	6,102	
신원	대현	산147	126,248	임	29,418	22,521	0	795	0	6,102	

○ 토석채취신청기간 : 2019.11. ~ 2021.10.30(3년간)

○ 채취용도 : 토목용

○ 채 취 량 : 174,432㎡

○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 주민의견 제시기간 및 방법

- 토석(토사)채취변경허가 신청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만료일까지 거창군청 산림과 또는 신원면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0. .

거 창 군 수

「거창군 거창창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거창창포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거창창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공간으로 조성된 거창창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댐 주변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함(안 제1조~제4조)
- 설치 및 위치, 기능을 정함(안 제5조·제6조)
- 창포원 운영을 정함(안 제7조~제17조, 별표 1)
 - 개원 및 휴원 : 매일 개원, 필요시 임시로 휴원일 지정
 - 운영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 체험프로그램 체험료 : 무료, 다만 재료비 등은 실비
 - 입장 및 행위제한

- 편의안전 확보
 - 창포원 내 회의실, 온실 내 체험실 등 시설의 이용 신청
 - 식물의 수량 등 조정
 - 자원봉사자 모집·운영
 - 온실 관리 : 병해충 방제, 온도·습도 유지
- 편의시설 운영(제18조~제22조, 별표 1 ~ 별표 3)
- 키즈카페 및 북카페 운영시간 :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 키즈카페 입장료, 다만 북카페는 무료
 - 카페 위생 관리
 - 키즈카페 입장제한 및 퇴장

4. 입법예고기간 : 2019. 10. 31. ~ 2019. 11. 20.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9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환경과 거창창포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주소 : (우50132) 거창군 남상면 창포원길 21-1 거창창포원

라. 전화 055-940-8842, 팩스 055-940-8849, 이메일 jhkim0829@korea.kr

붙임 :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 거창창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1부. 끝.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조 례 명 : 거창군 거창창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거창창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창포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황강의 수질 개선에 기여하고, 이용객의 자연체험, 자연학습 및 관람의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설"이란 거창창포원(이하 "창포원"이라 한다) 내에 조성된 기반시설, 건축물, 편의시설, 부대시설과 그밖에 자연체험, 자연학습 및 관람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물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창포원을 통하여 황강의 수질 및 경관 개선과 댐 주변 수몰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창포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거창창포원의 설치 및 위치) ① 군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따라 댐 주변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친환경공간으로 거창창포원을 조성한다.

② 창포원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남상면 월평리 2286-1번지 일원에 둔다.

제6조(기능) 창포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수질정화식물 식재로 수질개선 및 생태자연관광 활성화
2. 생태습지 및 생태 숲 조성으로 생물종 다양성 증대
3. 자연학습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자연을 주제로 하는 각종 행사의 개최

5. 키즈카페 및 북카페 등 운영

6. 그 밖에 창포원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운영·관리의 위탁) 군수는 창포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창포원의 운영 및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개원 및 휴원) ① 창포원은 매일 개원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창포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우 임시로 휴원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설의 개수·보수 및 안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운영을 중지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운영중지 등의 사유와 기간을 창포원 또는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라 임시 휴원일을 지정하거나 휴원일을 변경하려는 경우 : 임시 휴원일 또는 변경 휴원일 5일 전까지

2. 제3항에 따라 운영을 중지하는 경우 : 운영중지 시작일 10일 전까지

제9조(운영·관람시간) ① 창포원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창포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별로 관람시간과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체험프로그램 체험료 등) 체험프로그램의 체험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체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은 실비로 받을 수 있다.

제11조(입장 및 행위 제한) 군수는 창포원의 보호 및 관람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입장을 제한하거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에 따른 행위제한에 해당할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편의·안전 확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람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1조 후단에 따라 퇴장명령을 받고도 퇴장하지 않는 경우
2. 창포원 주변에서 관람자 등을 위협하는 등 소란을 일으키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3.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관람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
4. 관람자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한 위험이 급박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갖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제13조(시설의 이용 신청 등) ①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일 전 5일 까지 별지 서식의 창포원 시설 이용(변경이용)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신청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을 하도록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용목적이 창포원의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2. 공공의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식물의 수량 등 조정) ① 군수는 창포원 내 식물 종의 다양화와 재배 밀도의 적정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식물의 매각, 교환, 구입 등의 방법으로 식물의 종과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식물의 전시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식물을 무상으로 분양할 수 있다.

1. 군 및 산하기관 등의 환경미화 등에 필요한 경우
2. 각급 학교 및 연구기관 등에서 교육 및 연구 목적으로 분양신청을 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목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자원봉사자의 모집·운영) 군수는 창포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온실의 병해충 방제 등) 군수는 온실 내에 재배하거나 전시하는 모든 식물을 수시로 관찰하여 병해충방제, 거름주기, 물주기, 가지치기, 잡초제거 작업 등을 제때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온실의 온도·습도 유지 등) 군수는 온실 내에서 재배하거나 전시하는 온실식물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온실 내의 온도, 습도, 광선 등을 적절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편의시설 운영) 군수는 방문객의 편의를 위하여 각종 물품을 대여할 수 있고,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카페, 매점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키즈카페·북카페 운영시간) ① 창포원 내 키즈카페 및 북카페(이하 “카페”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키즈카페 입장마감시간은 오후 5시까지로 하며,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은 휴무한다.

② 군수는 창포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카페 입장료 등) ① 키즈카페의 입장료는 별표 2과 같다. 다만, 북카페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② 키즈카페의 입장료 감면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1조(카페 위생관리) 군수는 카페 이용자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위생상태 향상 등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2조(키즈카페 입장제한) 군수는 키즈카페 이용자의 보호 및 관람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장 후 공공 및 안전 등을 위해 퇴장하는 경우에는
일일 입장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 규정은 2020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거창창포원 및 키즈카페 입장·행위 제한(제11조·제22조 관련)

<p>1. 거창 창포 원</p>	<p>가. 입장 제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른 사람에게 위협 및 혐오감을 주거나 다른 사람의 관람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소란행위 등 미풍양속이나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 3) 감염병 등 다른 사람에게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4) 보호자가 없는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 5)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미취학 아동 6) 동반한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매지 않고 입장하는 사람 7)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p>나. 행위 제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식물의 꽃이나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거나 훼손(이물질 주입 등으로 식물을 말라 죽게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는 행위 2)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채집하거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3) 오물이나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4) 심한 소음이나 악취를 내게 하는 등 다른 관람자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5) 무단으로 대소변을 보거나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행위 6) 각종 시설물 및 전시물을 파손·훼손하는 행위 7) 노점상 등 영업행위 8) 그 밖에 거창창포원의 관람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p>2. 키즈 카페</p>	<p>가. 입장 제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호가목1)부터 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 입장에 따른 수용인원이 입장객의 안전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될 때 3) 그 밖에 이용자의 보호 등을 위해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별표 2]

키즈카페 입장료(제20조 관련)

구분	어린이	성인
기본(2시간)	3,000원	1,000원
추가요금(10분당)	500원	-

[별표 3] 키즈카페 입장료 감면기준(제20조 관련)

감면대상	감면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100분의 100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자녀 또는 손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수급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자녀 또는 손자녀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또는 손자녀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의 자녀 또는 손자녀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손자녀 포함)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손자녀 포함)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10. 자녀가 셋 이상인 가족. 이 경우 자녀 셋 모두 해당 	100분의 50

[별지 서식]

거창창포원 시설 이용(변경이용) 신청서

신청인 (개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남/여)
	주소	전화번호
신청인 (법인)	법인 또는 단체명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남/여) (서명 또는 인)	대표 전화번호
	소재지	
신청내용	이용 시설 회의실 [] 온실 내 체험실 [] 그 밖의 시설 []	
	이용 인원	
	이용 목적 및 내용	
	이용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변경사항	원 래	변 경

「거창군 거창창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거창창포원 시설의 이용(변경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거창군수 귀하

【관 계 법 령】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6. 8] [법률 제15624호, 2018. 6. 8, 타법개정]

제44조의2(댐 주변지역의 친환경공간 조성) ① 제41조와 제43조에 따른 다목적 댐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댐 주변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의 호수·늪 및 주변경관을 활용한 자연학습장, 생태공원, 수상체육시설 등 휴양·문화·여가활동 등을 위한 공간(이하 "친환경공간"이라 한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댐 주변지역의 친환경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카.(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하.(생략)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9. 4. 1.>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산림보호구역 재지정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 제7조, 제8조, 제11조의2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산림 보호구역 재지정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1. 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내역

※ 붙임문서 참조

2. 지정 사유

- 지정 : 산림보호법 제7조 제1항 제3호, 제4호

3. 지정 연월일

- 공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된 후 지정 고시

4.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5. 산림보호구역 재지정 예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산림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붙임 이의신청서 제출 및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거창군청 산림과 산림조성담당(055-940-346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내역 1부.

2. 이의 신청서 1부. 끝.

2019. 10.

거창군수

별도붙임 산림보호구역 재지정 예정지 1부. 끝.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 이의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고시된 보호구역 예정지			
산림 면적	m ²		
[]지정 []해제 예정고시일	. . . (제 호)		
이의신청 면적	m ²		

「산림보호법」 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및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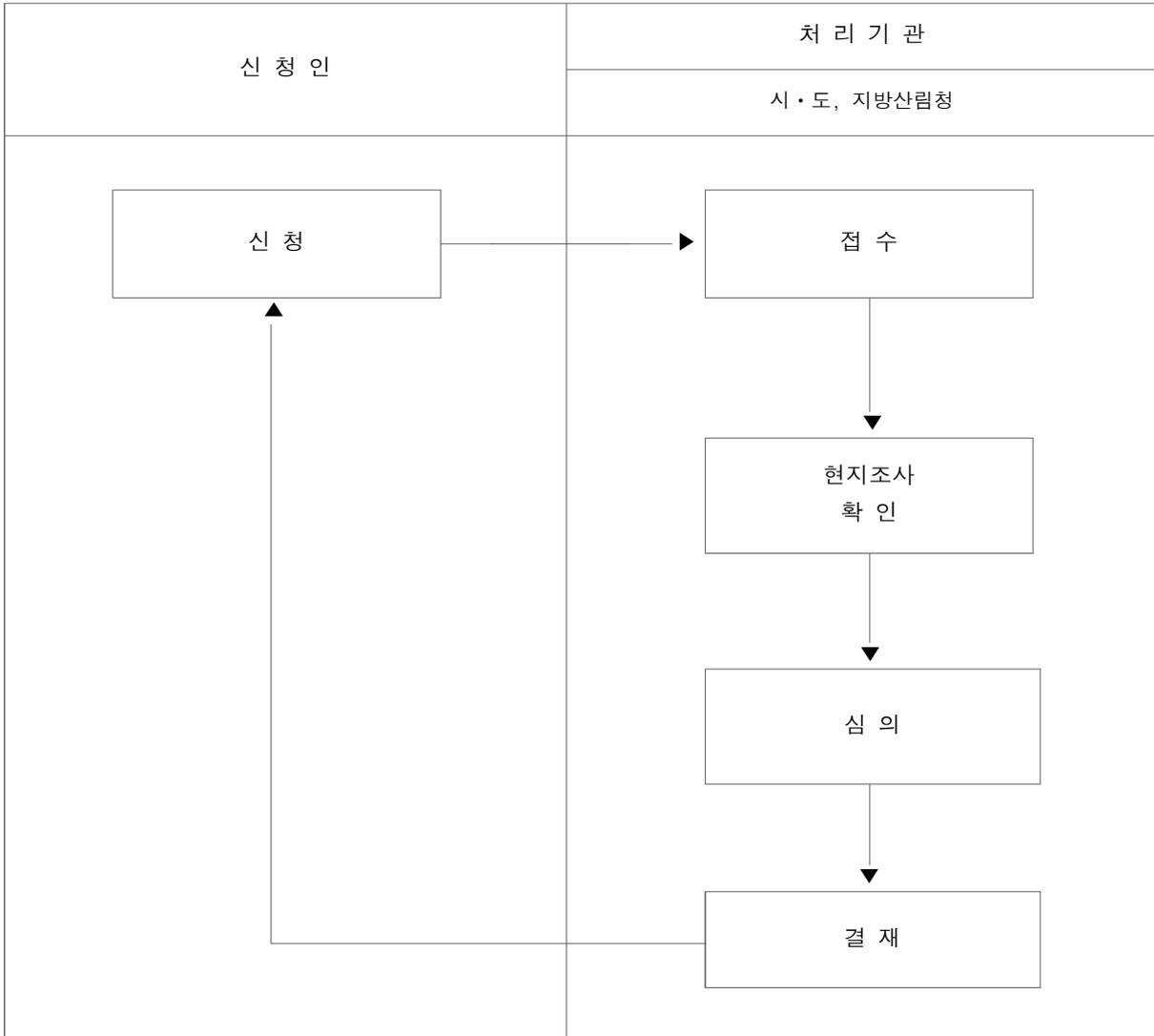
하 동 군 수 귀하

첨부서류	신청 이유서 1부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m²(재활용품)]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국도3호선 거창 성기지구 주상교차로 개선공사』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진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예정인 『국도3호선 거창 성기지구 주상교차로 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관계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6일

거 창 군 수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로 개설(교차로 개선)
- 명 칭 : 국도3호선 거창 성기지구 주상교차로 개선공사

2.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 주 소 : 경남 진주시 남강로 50(평거동 695-50)
- 성 명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3. 사업예정지 : 경남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 1158-3번지 일원

4. 사업의 규모 : 교차로 개선 L=0.6km

5. 사업의 목적 : 국도 교차로 개선으로 도로이용자들의 안전 및 편의 제고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 “별도첨부”

7. 열람기간 및 장소

- 장 소 : 거창군청 건설과(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3층)
- 기 간 : 2019. 11. 6 ~ 2019. 11. 20.

8. 주민의견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경제산업국 건설과(055-940-35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 및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1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	1401	도	334	186	국유 지	국토교통부	
2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	산126-1	도	99	20	국유 지	국토교통부	
3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	1398-1	구	893	530	국유 지	농림축산식품부	
4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	1163-1	도	10	10	국유 지	국토교통부	
5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	1162-3	도	47	47	국유 지	국토교통부	
6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	1143	도	1,815	598	국유 지	국토교통부	
7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	1145	도	70	47	국유 지	국토교통부	
8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	1144	도	1,190	705	국유 지	국토교통부	
9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	1399	도	4,148	3,753	국유 지	국토교통부	
10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	1146-1	도	2,086	864	국유 지	국토교통부	
11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	1158-3	도	60	60	장상 근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 929	
12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	1147	도	602	360	국유 지	국토교통부	
13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	1148-2	도	844	591	국유 지	국토교통부	
14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	1148	답	224	224	신용 옥	경남 거창군 주상면 도평리 342	
15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	1149	전	533	181	신용 옥	경남 거창군 주상면 도평리 342	
16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	1149-2	도	178	95	국유 지	국토교통부	
17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	1150	전	1,044	424	신성 재	경남 거창군 거창읍 동동	
18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	1150-3	도	682	224	국유 지	국토교통부	
19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	산127	도	1,867	203	국유 지	국토교통부	
20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	1151-1	도	1,133	668	국유 지	국토교통부	
21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	1151	도	160	160	국유 지	국토교통부	
22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	산118-5	임	1,774	947	강상 목	경기도 안성시 당왕동 534 대우아파트 101동806호	
23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	산118-4	도	7,868	3,543	국유 지	국토교통부	

24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	산118-9	임	52	52	국유지	국토교통부	
25	거창군 주상면 도평리	산117-3	임	347	347	국유지	국토교통부	
26	거창군 주상면 도평리	산117	임	1,737	196	강상목	경기도 안성시 당왕동 534 대우아파트 101동806호	
27	거창군 주상면 도평리	산116	임	4,446	51	장기영	경남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317-2	
28	거창군 주상면 도평리	산112	도	23,503	2,480	국유지	국토교통부	
29	거창군 주상면 도평리	산109	임	2,719	61	강우석	경남 거창군 거창읍 하동 242	
30	거창군 주상면 도평리	산114-1	도	39	39	국유지	국토교통부	
31	거창군 주상면 도평리	산114	임	60	60	백재운	-	
32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	산118	임	3,552	623	강상목	경기도 안성시 당왕동 534 대우아파트 101동806호	
33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	산118-2	임	19,418	5,578	하재성 외 1	경남 거창군 거창읍 강변로127,1003호	
34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	산122	임	298	298	신용범	거창읍 동동	
35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	산118-6	도	1,688	1688	국유지	국토교통부	
36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	1146-2	도	337	23	국유지	국토교통부	
37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	1142	도	1,316	1,316	국유지	국토교통부	
38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	1141-2	도	217	217	국유지	국토교통부	
39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	1140-2	도	255	255	국유지	국토교통부	
40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	1139-2	도	756	66	국유지	국토교통부	
41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	1139	도	542	318	국유지	국토교통부	
42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	1141-1	도	28	28	국유지	국토교통부	
43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	1164	도	506	207	국유지	국토교통부	
44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	1136	도	2,048	202	국유지	국토교통부	
45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	1395	도	7,296	9	국유지	국토교통부	

거창 국민체육센터 기간제근로자(수영강사) 채용시험 공고

거창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수영강사)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1. 1.

거창군수 (직인생략)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신분	채용분야	채용인원	근무장소	업무내용	비고
기간제근로자	수영강사	1명	거창군 체육시설사업소 (거창국민체육센터)	◦수영 강습 ◦수영장 안전관리 ◦강습프로그램 발굴 등	

2. 근무조건

- 신 분 : 기간제 근로자
- 채용기간 : 계약일로부터 ~ 9개월
 - ※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에 한해 1년 단위 재계약 가능
- 급 여
 - 기본급 : 일급 76,800원×근무일수
 - 각종 수당 : 주차, 월차, 연차, 휴일근로수당, 강사수당, 안전관리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외부특강 수당 등
 - ※ 연봉 : 44,000천원 정도(외부 특강 수업 별도)

○ 근무내용

근무 요일	근무 내용	근무 시간	비 고
화요일 ~ 금요일	수영강습 (안전근무 포함)	- 오전조 06:00 ~ 15:00 - 오후조 13:00 ~ 22:00	- 4개월마다 근무조 변경 근무
토요일 ~ 일요일	당직근무 (안전근무 포함)	"	- 토,일 근무 시 근무조 편성 후 순번대로 근무 실시 (월 4회 정도 근무)

※ 매주 월요일 휴관(휴무)

○ 후생복지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근무장소 : 거창국민체육센터 수영장

3.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4. 응시자격

가. 응시자격 기준

1) 다음의 자격증 소지자

생활스포츠지도사(수영) 2급 이상과 수상인명구조 관련 자격증을 모두 소지한 자

- 생활스포츠지도사(수영) 2급 이상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자격증을 취득한 자
- 수상인명구조 관련 자격증(수상구조사 또는 수상인명구조요원 자격증)
 - 수상구조사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2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자
 - 수상인명구조요원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제1호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수상레저 관련 기관이나 단체(이하 이 조에서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후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취득한 자

<해양경찰청장 지정 수상레저 기관(단체) 현황>

대한적십자사	(재)한국YMCA전국연맹	(사)한국해양소년단연맹
(사)대한인명구조협회	(사)한국해양구조협회	(사)한국산업잠수기술인협회
(사)한국구조연합회	(사)한국청소년스킨스쿠버협회	(사)대한수중핀수영협회
(사)한국라이프세이빙소사이어티	(사)수상인명구조교육협회	대한안전연합
(사)수상인명구조단		

- 2)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 3) 성 별 : 남녀 구분 없음(단, 남자의 경우 최종 면접 시험일 기준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자)
- 4) 거 주 지 : 제한 없음

나.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1) 거창군 공무원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11조(결격사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다. 응시자 우대사항

- 공공기관 수영강사 근무 경력자 우대
- 취업지원대상자 우대

5. 응시원서 교부(접수) 기간 및 시험시행 일정

공 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 시	장 소	
2019. 11. 1. ~ 11. 8.	2019. 11. 7. ~ 11. 8.	2019. 11. 11.(월)	2019. 11. 12.(화) 14:00	거창군 체육시설사업소	2019. 11. 15.(금)

가. 접수처 : 거창국민체육센터 1층 안내데스크

(경남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39-36)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09:00 ~ 18:00) / 인터넷 및 우편접수 불가

다. 합격자 발표 및 근무개시일

○ 최종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 추가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결과에 따른 최종합격자가 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 붙임 참조

- 반명함판 사진 2매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 원판의 탈모 상반신 칼라사진(3.5× 4.5cm)】 부착

나. 자기소개서 ----- 1부

다. 이력서(반명함판 사진 부착, A4용지 소정 양식)----- 1부

라. 경력(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통

- 수영강사 경력이 있는 자는 필히 제출 요함. 미제출 시 수영강사 경력 불인정함.

- 근무기간, 부서,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되고, 발급기관 관인 또는 직인이 있어야 함.

마. 자격증 발급 확인서 ----- 각1부

- 필수 제출 : 생활스포츠지도사(수영) 2급, 인명구조관련 자격증

- 선택 제출 : 기타 자격증

바.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최종 합격자에 한함) ----- 1통

마. 개인정보 동의서 -----1부

사. 주민등록표 초본(주소 이력사항 기재, 남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1부

※ 모든 제출서류는 채용공고 시작일 이후 발급받아 제출한 서류에 한해 인정함.

7. 기타사항

- 가.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나. 본 시험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통보합니다.
- 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라.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체육시설사업소 국민체육센터담당(☎055 - 940 - 87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응 시 원 서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접수번호			응시분야	국민체육센터 수영강사				사 진 (1) 6개월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 (3cm×4cm)
성명	(한글)		주민등록 번호	-				
	(한자)							
주소				전화 :				
				HP :				
학 력	부터	까지	학 교 명			전공학과	학위명	
가 족 사 랑	관계	성명	연령	학력	직업			
자 격 면 허	취득일자	종 별	병역	군별	계급	복무기간	미필사유	
주 요 경 력	기 간	직 장 명		직 위		담 당 업 무		
귀 군의 국민체육센터 수영강사(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2019년 7월 일 제 출 인 (인) 거 창 군 수 귀하								

응 시 표	성 명	한글			※응시번호			사 진 (2) 위와 동일사진 (3cm×4cm)
		한자			응시분야	국민체육센터 수영강사		
	주민등록번호				-			
2019년 월 일 거 창 군 수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자필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요령》

- ① 응시원서 : 응시원서 기재사항은 **자필**로 작성 제출
 - ② 응시분야 : 국민체육센터 수영강사 기재
 - ③ 주 소 :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
 - ④ 학 력 : 대학교 이하 란은 모든 응시자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대학원 졸업·재학·수료·중퇴인 응시자는 출신대학 및 대학원 모두를 기재
 - ⑤ 성 명 : 정자로 기재
 - ⑥ 주민등록번호 : 정자로 기재
- ※ 「*」 표시란 : 응시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생년월일(연령)	채용등급	채용분야
	. . (세)	기간제근로자	국민체육센터 수영강사

2019. . .

작성자 : (서명·인)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성장과정, 좌우명, 학교생활, 응시분야에 대한 경력 및 실적이 잘 나타나도록 작성
 - 또한, 응모분야에 대한 자신의 생각, 향후계획, 발전방안 등을 기술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반드시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거창군 체육시설사업소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기간제근로자 채용 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력·경력·자격사항 등

3.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못합니다.
- 기간제근로자 채용 심사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19년 월 일

성명 :

(서명)